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년 4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2. 7(토) 평창군수(환경복지과장)
- 나. 회부일자 : 2004년 4. 28(금)
- 다. 상정일자 : 제1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4. 28)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가.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반행위를 다루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함.(안 제7조 제3항)
- 피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 제1항)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게만 지급.(안 제8조 제2항)
-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 종이봉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9조)
- 위반행위에 대한 다품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기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 피신고자와 행정기관과의 불필요한 다품을 최소화하기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50%를 감액해주고
 - 피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 과태료 부과시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자판기의 1회용컵 및 소형 종이봉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만큼, 입법예고를 거친 법안이라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정확한 규제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꾸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부.